

진료수가 기준개선과 원무행정의 과제

方 玉 均

〈보사부 의료보험국 수가담당사무관〉

〈이 글은 대한병원협회 제12차 의료보험연수회의
발표문이다. -편집자-〉

I. 서 론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여년만에 이룩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만큼 모든 국민은 물론, 정부, 의료계, 보험자 등 각계, 각층의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일반국민은 자기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적절하게 친절환 의료서비스를 불편없이 받을 수 있을 때 이 제도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의 발전과 의료인의 긍지를 가지면서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지장이 없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보험자는 합리적인 보험제도의 기반위에 보험을 관리, 운영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바램과 다른 분야의 요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의료보험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국민의료보장의 실현에 따른 바램과 욕구 또는 역할 등은 각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의료보험의 주요제도내용에 대한 관심도도 또한 약간씩 다르다.

이중 특히 많은 사람들의 주요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는 다음의 내용들일 것이다.

-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보험료 부과방법
- 의료취급기관 지정 또는 계약제
- 보험급여수준의 적정화 방안
- 의료보험수가기준 및 진료비 심사·지불제도
-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 등 관련제도의 변화 방향

따라서 여기에는 국민, 의료계, 보험자 및 정부 등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항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89년도 조정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무행정이 의료보험수가조정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89년도 의료보험수가 조정기본방향

1. 목 적

○ '89년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의료보험 수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적정급여의 실현

2. 기본방침

- 정부, 의약계, 보험자, 학계 및 소비자 등이 공동 참여
- 전문연구용역기관의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객관적 근거에 의한 수가조정
- 약·재료 등 물적부문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진료수가부문 조정 중시
- 의료보험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 간소화 방안 강구
- 기타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점 개선 보완

3. 주요검토사항

- 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양방, 한방)
 - 적정수가 조정률 산정 :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결과 등에 의함
 - 수가부문별, 항목간 균형 검토
 - 의약분업, 진료전달체계 등 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 수가 검토
 - 의학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가 항목 신설, 삭제 및 통폐합

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 진료지역 및 진료체계 변화에 맞는 진료수급 절차

검토

- 진료비 청구,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 등
- 다. 기타 관련사항 검토

4. 추진개요

가. 실무작업반의 기초자료 분석

◦ 수가조정 관련 기초자료 수집, 조사, 분석 및 계수조정 작업 등 담당

-연도별 급여실적, 보험재정 현황 및 추이분석

-의·약 관련단체 및 학계의 자료분석 검토 및 관련학회, 의료보험진료비심사위원회의 자문

-진료행위별 계수조정 작업

나. 요양취급기관 경영수지 분석

◦ 병·의원 경영실태 조정연구에 따른 적정수가 조정률 산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병·의원 경영수지변동 사항 분석

-장기적으로 진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적정수가 조정률 제시

다. 의료보험수가 실무위원회의 수가조정 검토

◦ 수가조정시안 마련 및 관련단체 의견조정

라.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처 협의

◦ 의료보험수가조정 안에 대한 심의 확정

◦ 경제기획원 협의

위와 같은 일련의 수가조정과정을 통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89. 7) 이전에 이를 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III. 의료보험수가와 원무행정의 과제

다음은 의료보험수가와 관련하여 원무행정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원무회계관리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의료의 건설한 발전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과 국민의료비 부담수준의 적정화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의료의 건설한 발전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에 드는 비용과 적정국민의료비 부담수준을 계량화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문제와 보험재정 등도 고려하여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정진료수가항목예로 들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인 진료행위별 수가(fee for Service)를 각각의 진료행위마다 원가계산에 의하여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진료행위나 그 내용은 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뿐 아니라 진료행위 그 자체가 많은 변수에 의하여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간접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많은 가정이 요구되며, 원가계산을 위한 막대한 업무량과 복잡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결국 행위별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수가결정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원가개념에 근거한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의 업무 및 회계관리가 표준화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1988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1987년도의 요양취급기관 경영분석결과에서 뚜렷이 증명된 사실이다. 당시 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회계 및 원무자료의 관리수준 등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개념에 입각한 행위별수가를 산출해내기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무행정과 회계관리의 표준화와 꾸준한 개선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접근이 용이하도록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합리화노력에 대한 역할제고

의료분야의 경영관리수준이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87년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경영분석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요인은 의료계의 자발적, 지속적인 내부 원가절감 노력 및 경영개선, 경영합리화 노력에 의하여 부분적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영수지악화요인을 의료수가의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자체흡수하려는 의료산업전체의 공동노력이 부단히 지속될때 국민의료비 부담수준의 적정화와 의료산업의 건설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경영의 합리화 노력은 영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국 민의료보장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원무행정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외시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전문종사자 및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된다고 본다. 특히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상호간에 이에 관한 의사 및 정보교환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3. 원무행정의 위상정립

전국민의료보장시대를 기점으로 의료기관의 원무행정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원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진료비 산정 등 그동안 발전시킨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불신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노력을 통하여 원무행정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病院人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週刊「병원신보」는 「독자란」을 마련, 전국 病院人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病院人이면 누구나 職種을 가리지 않고 투고를 환영합니다. 病院人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에서 만나십시오.

■ 원고종류 : 논문(병원경영, 관리 등 병원 관련내용), 소설, 시, 수필, 직무수기, 제언, 만평, 만화 등

■ 투고자격 : 의사, 간호원, 의료기사, 행정사무직 등 병원근무 전직종 및 병원관련인사.

■ 원고마감 : 수시

■ 보 낼 곳 : 우편번호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 (마포현대빌딩 14층)

주간「병원신보」독자투고담당자 앞

■ 기 타 : ① 게재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 원고관계 사진, 그림 및 필자사진 동봉

病 院 新 報